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02

발의연월일: 2021. 5. 4.

발 의 자:김윤덕·박상혁·안호영

정춘숙 · 임종성 · 신영대

이원택 · 강병원 · 김병기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국토를 조성하고, 해당 부지를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·이용 및 보전하는 사업으로,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년에는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었고, 현재는 조성된용지에 항만,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.

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정한 성과 또한 내고 있지만,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관 한 각종 자료를 수집 및 전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,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, 시시각각으로 발전 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, 박물관의 법인격, 사업 및

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근 거를 마련하고 간척 및 새만금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 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·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 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고, 국립새 만금간척박물관은 법인으로 함(안 제53조의3 신설).
- 나.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, 박물관자료의 발굴· 수집·보존·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53조의 5 신설).
- 다.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(안 제53조의6 신설).
- 라.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를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,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함(안 제53조의7 신설).
- 마. 관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만금청 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53조의8 신설).
- 바.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(안 제53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2(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10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

- 제53조의2(정의) 이 장에서 "박물관자료"란 간척 및 새만금과 관련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.
 - 1. 제53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할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
 - 2. 간척 및 새만금과 관련된 역사·민속·예술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- 제53조의3(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) ①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·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

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.
-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 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3조의4(정관)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
 -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6.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 - 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 -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제53조의5(사업)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

- 2. 박물관자료의 발굴·수집·보존·관리 및 전시
- 3. 박물관자료의 조사 · 연구
- 4.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
- 5.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- 6. 부설기관의 운영 · 관리
- 7.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
- 8.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- 9.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과 관련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53조의6(재원)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- 1.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 - 2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
 - 3. 그 밖의 수입금
 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 - ③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

다.

- ④ 박물관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53조의7(박물관자료의 위탁·관리)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 료의 전문적인 보존·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53조의8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① 박물관의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박물관의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 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, 파견기간,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3조의9(감독)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

령을 할 수 있다.

-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- 제53조의10(준용)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2(정의) 이 장에서 "박물
	관자료"란 간척 및 새만금과
	관련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
	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・무
	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
	<u>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</u>
	<u>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</u>
	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.
	1. 제53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
	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
	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
	하여 수집・보존・관리・조사
	<u>・연구・전시할 학문적・예술</u>
	적 가치가 있을 것
	2. 간척 및 새만금과 관련된 역
	<u>사·민속·예술·과학·기술</u>
	・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<u> <신 설></u>	제53조의3(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
	의 설립 등) ① 간척과 새만금
	의 유산을 발굴・수집・관리・
	보존・조사・연구・전시 및 교
	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

<u>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</u> 다)을 설립한다.

-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①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3조의4(정관) ① 박물관의 정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
-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6.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 항
- 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-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

야 한다.

제53조의5(사업)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 장기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
- 2. 박물관자료의 발굴·수집· 보존·관리 및 전시
- 3. 박물관자료의 조사 · 연구
- 4.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
- 5.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- 6. 부설기관의 운영·관리
- 7.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 류·협력
- 8.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 업
- 9.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과 관련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
-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3조의6(재원) ① 박물관의 사

<신 설>

- 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 다.
-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- 2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 금
-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 물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- ③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- ① 박물관은 「기부금품의 모 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.
- 제53조의7(박물관자료의 위탁· 관리)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 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

<u><신</u>설>

생만금청장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·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 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① 박물관의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

할 수 있다.

제53조의8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

② 박물관의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, 파견기간, 파견요청 사유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3조의9(감독)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검사할 수 있다.

제53조의10(준용) 박물관에 관하 여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